

Issue No.
2020-2
February 2020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엔 인권 이사회 소식

유엔인권이사회 제43차 회의가 2월 24일 유엔제네바 본부에서 개막했다. 3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권리, 종교의 자유, 아동매매, 적정주거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상호 대화 (Interactive Dialogue)가 개최된다. 이 중 신기술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논의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과 관련하여 신기술이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인권에 기반한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의 이행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사회 불평등, 격차 심화와 같은 기술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것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회원국 정부, 민간기업, 그 밖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 가지 권고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1. 신기술의 개발, 활용, 관리 시 인권의 보호 및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등한 인권 존중 및 실현을 보장한다.
2. 정부는 민간부문 대상 규제를 포함한 입법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도입된 이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를 모두가 향유하고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 간, 국가 내 디지털 격차 및 기술 격차를 축소하고, 신기술의 품질, 적응성, 이용가능성, 접근성 증진에 포용적인 방식을 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4. 기술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보호권에 투자하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5. 공공부문의 신기술 사용, 특히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6.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결정에 모든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7. 인공지능시스템을 포함한 신기술기반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실시한다.
8. 국내법과의 괴리 파악 및 대응, 감독제도 수립, 신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방안 마련과 같이 신기술의 활용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체계를 수립한다.
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필수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한다.
10.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나 인권조약기구 보고서 작성시 신기술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목한다.

국제앰네스티: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권에 미치는 7가지 영향



1. 조기 검열

중국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 2019년 12월 우한의 의사들이 감염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처음 발견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루머확산”의 죄목으로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2. 건강권

우한의 의료체계는 환자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몇시간씩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필수적인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권리,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3. 지속적인 검열

중국당국은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염증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이나 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공격

피해상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시민기자들이 실종되거나 당국의 처벌을 받으면서 공유되어야 할 진실된 정보까지 은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 “가짜뉴스”에 대한 지역차원의 규제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도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정확한 공중보건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비례하고 합당하면서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6. 차별과 외국인혐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중국인, 아시아인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호주의 언론들이 인종주의적 태도로 관련 사태를 보도해서 비판받기도 했다.

7. 국경관리 및 격리

격리는 움직임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합법적 목적을 지녀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http://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2/explainer-seven-ways-the-coronavirus-affect-human-rights>

인종주의 및 불관용에 대응하는 유럽위원회, 혐오표현 근절에 관해 유럽평의회 회원국에 일반정책권고 제시

인종주의 및 불관용에 대응하는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ECRI)는 유럽 평의회의 모니터링 기구로 차별금지국 (Anti-discrimination Department)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모니터링 절차, 협력활동의 이행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ECRI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의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유대인혐오, 불관용, 차별 문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에 혐오표현 근절에 관한 일반정책권고 제15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권고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유럽인권협약 제12호 의정서 (Protocol No. 12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차별금지 관련) 비준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차별 및 혐오 금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0조, 혐오 금지)의 유보조항 철회
3. 혐오표현을 유발하는 상황과 혐오표현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측정, 적절한 구제책 제시
4. 다원주의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혐오표현의 근거가 되는 허위내용을 밝힘
5. 혐오표현의 개인, 집단 피해자들이 행정절차나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6. 공공, 민간기관이 혐오표현 근절의 방법으로 자율규제를 채택하도록 장려, 혐오표현의 의미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
7. 미디어에 대한 규제권한을 이용하여 혐오표현 사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장려하고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함
8. 폭력, 위협, 적의, 차별 행위의 선동의도를 가진 혐오표현의 사용에 대한 민법, 행정법의 범위와 책임의 적용가능성을 확립
9. 혐오표현을 사용하거나 구성원의 혐오표현 사용을 처벌하지 않는 정당이나 그 밖의 조직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철회
10.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한, 폭력, 위협, 적의, 차별행위를 선동하는 의도로 공적인 맥락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실시

기획특집 (인권조약)

행사달력

안산시, 아시아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된다

유럽평의회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은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4개국 136개 도시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아시아 국가 도시는 1개에 불과하다.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은 지역당국이 경제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문화간 상호작용, 중재, 안전 및 안보, 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호문화정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과 정책업무 지침서를 테스트했다. 이를 통해 차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집중하는 루머금지전략 (anti-rumors strategy)과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도시의 프로필, 우수 사례 데이터베이스, 단계별 지침, 매뉴얼 등이 제공된다.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고자 하는 도시는 “상호문화도시 지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지표는 구성원의 참여, 상호작용, 동등한 기회, 다양성 존중 관련 90개 지표, 10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유럽평의회가 유사한 도시의 우수사례와 권고사항을 제시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 이후 유럽평의회 대표와 독립전문가들이 해당 도시에 방문하여 도시 정책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한다. 이후 정책담당자들이 포괄적인 상호문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안산시는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유럽평의회가 제시하는 90개 지표 103개 문항을 충족하면서 유럽평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이번에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회원도시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상호문화도시 육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이해교육도 추진하고자 한다.

<http://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
<http://www.todaya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6>

2020년 3월 UN주요회의 일정

일시	회의명
2/17-3/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67차 회기
2/24-3/20	인권이사회 제42차 회기
3/2-3/6	아동권리위원회 제84차 회기
3/2-3/27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8차 회기
3/9-3/27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요.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